

## ◎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-445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” 및 “전기용품 안전기준(KC 10031)” 제·개정 고시

#### 1. 제·개정 이유

##### 가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

-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지정(안 제2조, 제3조 개정 및 별표3의2 신설)
-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규정(안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 개정)
-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절차 마련(안 제17조의2 신설)
-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번호 부여기준·사실확인서 발급 및 표시 등 세부사항 규정(안 제7조, 제11조, 제57조, 제58조, 제59조, 별표8, 별표23, 별지 제4호서식, 제5호서식 개정, 제56조의2, 제56조의 3, 별지제8호의2 서식 신설)
- 기존 절차를 안전성 검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정비(안 제25조, 제26조, 제36조, 제44조, 제63조, 별표 25 개정)
- 법률 조항번호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(안 제49조 개정)

##### 나. 전기용품 안전기준(KC 10031) 제정

- “재사용전지”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대상 전기용품인 재사용전지 적용 안전기준 제정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

-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으로 재사용전지모듈 및 재사용전지시스템을 정의
- 기존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사 절차 마련
- 안전성검사결과에 대한 책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, 책임보험 가입 세부기준 마련
- 안전성검사 결과 후 검사 결과서 발급 및 서식 규정,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표시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
- 기존 조문에 안전성검사 기관 등을 반영하고, 시험결과서 서식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며, 새롭게 제정되는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현황 반영

#### **나. 전기용품 안전기준(KC 10031) 제정**

- 재사용전지 안전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,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, 기능안전성검토 항목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시험절차 마련

### **부 칙**

#### **가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**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**나. 전기용품 안전기준(KC 10031) 제정**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KC62619 8절의 적용례) 국가기술표준원 고시(제2023-0275)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KC62619 8절은 본 안전기준 시행일에 적용한다.)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 → 고시·공고)